

[별표 2]

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등

1.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비 및 수거량 산출기준

가) 음식물전용봉투 사용분

-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·수거량은 대행업체에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매월 판매한 음식물전용봉투를 ℓ 로 변환하고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별표 1의 종량기준 환산계수를 적용($1 \ell = 0.8\text{kg}$)하여 산출한다.
- ② 수집·운반 원가는 동조례 별표 1에 따른다.
- ③ 수집·운반비용의 계산은 배출·수거량에 수집·운반 원가를 곱하여 계산한다.

나) 공동주택 수집·운반비 및 수거량 산출

- ① 수집·운반 원가 및 수거량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별표 1에 따른다.

다) 소형음식점 등 사업장 계약분 수집·운반비 및 수거량 산출

- ① 수집·운반 원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비용 원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61원/kg(80원/kg의 76.25%)으로 하며, 반입수수료는 19원/kg(80원/kg의 23.75%)으로 한다.
- ② 소형음식점 등 사업장 계약분의 수거량은 처리시설로의 총 반입량에서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배출·수거량과 공동주택 배출·수거량을 감한 것으로 한다.

라) 성북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산출 (대행업체 수집·운반분)

- ① 성북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산출량은 상기 규정에 의한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배출·수거량에 공동주택 및 음식점 계약분 수거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.

2. 반입수수료의 징수

가) 공동주택 : 120ℓ 스티커 1매(7,200원)의 35%인 2,520원으로 한다.

나) 소형음식점 등 사업장 계약분 : 80원/kg의 23.75%인 19원으로 한다.

다) “계약상대자”가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지급하는 운송비 등 지원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.

3.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비

가) 단독주택지역 :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

나) 공동주택지역

- ①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금액(120ℓ 1매 = 7,200원)으로 하고, 수집·운반비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다.
- ② 수수료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부과·징수하고 고지에 의한 무통장입금 또는 지로납부징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정산을 위하여 “계약상대자”는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부과 현황을 익월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계약상대자”는 ①항의 부과·징수한 공동주택 수수료 중 2,520원(35%)을 반입수수료로서 익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“발주기관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다) 소형음식점 등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금액(80원/kg)에 계약하며, 수수료에는 수집·운반비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다.
-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대상자와 “계약상대자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고지에 의한 무통장 입금 또는 지로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정산을 위하여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 및 수수료 부과·징수 현황을 익월 10일전까지 “발주기관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이때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)
- ⑤ “계약상대자”는 ①항의 부과·징수한 소형음식점 수수료 중 23.75%를 반입수수료로서 익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“발주기관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4. 음식물류폐기물 운송수수료

가) 운송수수료는 톤당 100km 기본으로 하여 분기별 평균가격 연동제를 통해 산정한다.

- 단가 기준 : 운송비 지급달의 직전 분기 3개월간의 평균가격을 적용

※ 유류단가 산출예시 (경유ℓ당)

$$2014년 4/4분기 = [7월평균가격 + 8월평균가격 + 9월평균가격] / 3$$

- 경유가격 기준 :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월별 주유소 평균가격 적용

나) 운송수수료 지급단가 변경사항은 분기 해당월 10일까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개별 통보한다.

- 다) “계약상대자”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재상태에서 총중량을 계근하고, 위탁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 후 공차상태에서 공차를 계근 하여야 한다. 차량의 취득 또는 구조변경 등 차량의 중량에 변동을 주는 원인이 있을시 “발주기관”에게 알려야 한다.
- 라) “발주기관”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집·운반 원가분석 결과 톤당 수송원가 산출식을 적용하되 “계약상대자”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